

# HK연구교수 인사규정

(제정 2018. 6. 1.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 한국고전학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(이하 “HK+”라 한다) 연구단의 인문한국연구교수(이하 “HK연구교수”라 한다)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HK연구교수는 「인문한국플러스 지원사업 관리운영지침」(이하 “운영지침”이라 한다.)에 따라 연구교수로 임용된 자를 말한다.

**제3조(자격)** HK연구교수는 국내·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.

**제4조(채용방법 및 절차)** ① 채용방법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그 방법과 절차 및 심사평가항목 등은 본교 「연구교수 임용세칙」을 따른다.

② HK연구교수의 신규채용 시 본교 출신(박사학위 취득자)이 5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본교 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인문학이 아닌 타 학문분야 전공 학위취득자의 경우 타교 출신으로 간주한다.

**제5조(임용)** ① HK연구교수는 본교 「연구교수 임용세칙」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의 추천과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.

③ HK+연구단장은 HK연구교수의 재임용을 원할 경우 임용만료일 1개월 이전에 교무처에 재임용 요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복무)** ① HK연구교수는 HK+연구단에 상근하여야 한다.

② 그 밖에 HK연구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「교직원 복무규정」에 따른다.

**제7조(강의)** ① HK연구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연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HK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주당 6시수 이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.

**제8조(보수 및 대우)** ① HK연구교수의 보수는 HK+연구단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HK연구교수에게 1인당 4.95㎡ 이상의 연구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,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한다.

**제9조(계약의 해지)**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HK연구교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HK연구교수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3. 병약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
4. 그 밖에 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

② 본 조항은 HK+사업 종료 전까지 유효하며 종료 후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

**제10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사항은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